

2015년판 『건축설비기사과년도』 2차 정오표 [2015.3.4.]

page	오	정	비 고
[위생] 260	비상콘센트설비 ①설치 : 11층 이상의	비상콘센트설비 ①설치 : 11층 이상의~	11층→7층→11층
[과년도] 31	[21]해설란 중...	전양정(H)=(60+15+10)×1.15=97.75=98m	☞ 하단참조(추가해설)

☞ 하단참조 내용

☞ 260p 개정부분 관련

비상콘센트설비 설치기준이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1층 이상의 층'에서
최근 개정법 15년1월6일(시행일 15.4.7)에서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11층 이상의 층'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지하층을 포함하지 않는 층수로 11층 이상인 점 주의하여야 합니다.

시행일이 15.4.7일자이므로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개정사항이기에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비상콘센트설비 설치기준(NFSC 504)이

11층→7층→11층 그리고 지하층 포함에서 지하층 제외로...

설치높이 1~1.5m→0.8~1.5m로...

최근 잦은 법개정으로 학습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 과년도 31p [21]번 수정부분(추가해설)

실양정 60m+마찰손실수두 15mAq(=15m)+스프링클러 노즐 소요수압(0.1MPa=10m)

∴ (60+15+10)×1.15=97.75=98m

해당 소화전의 노즐 소요압력을 계산해주어야 한다는 점과 소화용 펌프의 전양정은 각 수두를 합
계한 값에 10~20% 정도 여유(안전율)를 두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즉, (흡입양정+토출양정+마찰손실수두+소화전의 노즐 소요압력)×안전율...

로 계산됩니다.

2015년판 『건축설비기사 과년도해설』 1차 정오표 [2015.2.13.]

page	오	정	비 고
[일반] 69	(2)기둥...②.. ~ 원형기둥에서는 6개 이상	원형기둥에서는 4개 이상(나선철근 : 6개 이상)	
[위생] 260	2)비상콘센트 ①설치: 11층 이상	7층 이상	법 개정
[공조] 371	[08]예제, 해설	현열비(SHF) : 전열변화량에 대한 현열변화량의비	
416	②순환수량.. 공식 중	$= \frac{H_{CT}}{C\Delta t}$ [ℓ/s].. 삭제	
470	[02]보기 중 ③ 25.	③ 25.5	
530	[15]~~ 옳은 것은?	~~ 옳지 않은 것은?	
[법규] 694~695		☞ 하단참조	법 개정
703		☞ 하단참조	법 개정
703	※ 다중이용건축물의 정의 중에서...	운수시설(여객용시설만 해당)	
709		☞ 하단참조	법 개정
728	5. ②..㉠ 중에서	여관, 여인숙 ... 삭제	법 개정
737		☞ 하단참조	법 개정
741	하단 2째줄.. 60점 이상	65점 이상	
755	방염성능기준...	☞ 하단참조	
825	[03]... 해설 수정	☞ 하단참조	

☞ 하단참조 내용

[건축법 개정, 신설사항에 유의하여 시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694~695p

③ 제1종 근린생활시설 수정사항[일부]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④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수정사항[전체]

- 가. 공연장, 종교집회장으로서 500㎡ 미만인 것
- 나. 자동차영업소로서 1,000㎡ 미만인 것
- 다.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라. 총포판매소
- 마. 사진관, 표구점
- 바.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으로서 500㎡ 미만인 것
- 사.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으로서 300㎡ 이상인 것
- 아. 일반음식점
- 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차.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교습소(자동차 교습 및 무도 교습을 위한 시설은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로서 500㎡ 미만인 것
- 카. 독서실, 기원
- 타.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으로서 500㎡ 미만인 것
- 파.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500㎡ 미만인 것
- 하. 다중생활시설로서 500㎡ 미만인 것
- 거.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500㎡ 미만인 것
- 너. 단란주점으로서 150㎡ 미만인 것
- 더.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703p [표] 수정부분(지방건축위원회)

②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단,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제외) 삭제

④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709p [표] 수정부분(1. 및 8.항 추가)

1.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

구 분	구조계산 대상 건축물
1. 층수	3층 이상 (대지가 연약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할 필요 있는 지역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 2층 이상)
2.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창고, 축사, 작물 제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3. 높이	13m 이상
4. 처마높이	9m 이상
5. 경간	10m 이상 *경간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 사이의 거리를 말함)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등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8. 특수구조 건축물 중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과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 737p [표] 수정부분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	건축물의 규모	용도 및 협력사항
건축구조기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층 이상 건축물 • 특수구조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지진구역의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참고]

▶ **특수구조 건축물**

- ①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 ②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20m 이상인 건축물
- ③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 755p [표] 수정부분

1)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근린생활시설 중 안파서술소 및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②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③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④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⑤ 상기 ①부터 ④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

⑥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교재 내용(777p) 중 안파서술소...삭제하고 ⑥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추가합니다.

☞ 825p 수정부분

03번 문제...

[해설] 전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경우)

④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사찰·제실·사당 및 동식물원은 제외)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전층

—㉠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

—㉡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m²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000m² 이상

—㉢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에 있는 경우에는 300m² 이상

—㉣ 무대부가 ㉢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m² 이상

[해설] 소방시설 설치의 예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분무소화설비·간이스프링클러소화설비·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화설비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영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참조)

☞ 최근 개정, 신설된 법 주요내용 추가정리

▶ 특수구조 건축물

①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②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20m 이상인 건축물

③ 특수한 설계·시공·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 **실내건축**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①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
- ②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
- ③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가스·급수(給水), 배수(排水)·환기시설의 재료
- ④ 실내에 설치하는 층돌·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

▶ **건축물의 범죄예방**(법 제53조의2, 영 제61조의 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은 상기 ①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1.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4.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
-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
- 6. 노유자시설
- 7. 수련시설
-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